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·운영 지원,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·확산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